

「금융상품거래법」 (제1조-제2조)

국 가·지 역: 일본

• 법 **률** 번 호: 소화23<1948>년 법률 제25호

공 포 일: 1948년 4월 13일
개 정 일: 2019년 12월 11일

원문	번역문

第一章 総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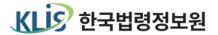
第一条(目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업 내용 등의 공시 제도를 정비함과 아울러 금융 상품거래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금융상품거래소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금융상품 등의 거래 등, 원활한 유가증권의 유통 외에 자본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여 금융상품 등의 공정한 가격 형성 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투자자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第二条 (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有価証 券」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 いう。

- 一 国債証券
- 二 地方債証券
- 三 特別の法律により法人の 発行する債券(次号及び第 十一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 。)

四 資産の流動化に関する法律 (平成十年法律第百五号) に規定する特定社債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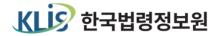
五 社債券(相互会社の社債券を含む。以下同じ。) 六 特別の法律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の発行する出資証券(次号、第八号及び第十一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

七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 出資に関する法律(平成五 年法律第四十四号。以下 「優先出資法」という。) に規定する優先出資証券 八 資産の流動化に関する法 律に規定する優先出資証券 又は新優先出資引受権を表 示する証券

제2조 (정의)

- ①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란 다음과 같다.
 - 1. 국채증권
 - 2. 지방채증권
 - 3.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제4호 및 제 11호를 제외한다)
 - 4.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평성10<1998>년 법률 제105호)에 따른 특정 사채권
 - 5. 사채권(상호회사의 사채 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제7호, 제8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7.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평 성5<1993>년 법률 제44 호. 이하 "우선출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우선출자증권 8.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출자증 권 또는 신우선출자인수권 을 표시하는 증권





九 株券又は新株予約権証券

十 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 関する法律(昭和二十六年 法律第百九十八号)に規定 する投資信託又は外国投資 信託の受益証券

十一 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 に関する法律に規定する投 資証券、新投資口予約権証 券若しくは投資法人債券又 は外国投資証券

十二 貸付信託の受益証券 十三 資産の流動化に関する

T三 質産の流動化に関する 法律に規定する特定目的信 託の受益証券

十四 信託法 (平成十八年法 律第百八号) に規定する受 益証券発行信託の受益証券

十五 法人が事業に必要な資金を調達するために発行する約束手形のうち、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

十六 抵当証券法(昭和六年 法律第十五号)に規定する 抵当証券

十七 外国又は外国の者の発 行する証券又は証書で第一 号から第九号まで又は第十 二号から前号までに掲げる 9. 주권 또는 신주예약권증 권

10.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소화26<1951>년 법률 제198호)에 따른 투자신탁 또는외국투자신탁의 수익증권11.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에 따른투자증권, 신투자구예약권증권이나 투자법인채권 또는외국투자증권

12. 대부신탁의 수익증권13.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목적신

탁의 수익증권

14. 「신탁법」(평성 18<2006>년 법률 제108 호)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 탁의 수익증권

15. 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 행하는 약속어음 중 내각부 령으로 정하는 것

16. 「저당증권법」(소화6<1931>년 법률 제108호)에 따른 저당증권

17. 외국 또는 외국인이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証券又は証書の性質を有するもの(次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

十八 外国の者の発行する証 券又は証書で銀行業を営む 者その他の金銭の貸付けを 業として行う者の貸付債権 を信託する信託の受益権又 はこれに類する権利を表示 するもののうち、内閣府令 で定めるも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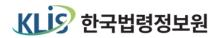
十九 金融商品市場において 金融商品市場を開設する者 の定める基準及び方法に従 い行う第二十一項第三号に 掲げる取引に係る権利。外 国金融商品市場 (第八項第 三号ロに規定する外国金融 商品市場をいう。以下この 号において同じ。)におい て行う取引であつて第二十 一項第三号に掲げる取引と 類似の取引(金融商品(第 二十四項第三号の二に掲げ るものに限る。) 又は金融 指標(当該金融商品の価格 及びこれに基づいて算出し

증권 또는 증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제18호를 제외한 다)

18. 외국인이 발행하는 증 권 또는 증서로서 은행업을 하는 자, 그 밖의 금전대부 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 부채권을 신탁하는 신탁의 수익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표시하는 것 중 내 각부령으로 정하는 것 19. 금융상품시장에서 금융 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 른 제21항제3호의 거래에 관한 권리. 해외금융상품시 장(제8항제3항의나¹에 따른 해외금융상품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하는 거래로서 제21항제3호 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금 융상품(제24항제3호의2로 한정한다) 또는 금융지표 (해당 금융상품의 가격 및 이에 기초하여 산출한 수치 로 한정한다)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리 또

¹ 일본의 법조문 체계는 "편-장-절-관-목/조-항-호"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목"에 해당하는 항목의 명칭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목"에 해당하는 것은 "~호의가, 나, 다" 또는 "가, 나, 다···"와 같이 번역한다.





た数値に限る。)に係るものを除く。)に係る権利又は金融商品市場及び外国金融商品市場によらないで行う第二十二項第三号若しくは第四号に掲げる取引に係る権利(以下「オプション」と表示する証券又は証書

二十 前各号に掲げる証券又 は証書の預託を受けた者が 当該証券又は証書の発行された国以外の国において発 行する証券又は証書で、当 該預託を受けた証券又は証 書に係る権利を表示するも

二十一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流通性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公益又は投資者の保護を確保することが必要と認められ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証券又は証書

2 前項第一号から第十五号までに掲げる有価証券、同項第十七号に掲げる有価証券(同項第十六号に掲げる有価証券の性質を有するものを除く。)及び同項第十八号に掲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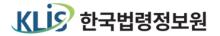
る有価証券に表示されるべき

는 금융상품시장 및 해외금 융상품시장에 따르지 아니 하는 제22항제3호나 제4호 의 거래에 관한 권리(이하 "옵션"이라 한다)를 표시하 는 증권 또는 증서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증권 또는 증서를 예탁받은 자가 해당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된 국가 외의국가에서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 또는 증서와 관련된권리를 표시하는 것 21.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외에 유통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유가증권, 제1항제17호의 유가증권(제1항제16호의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및 제1항제18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하는 권리, 제1항제16호의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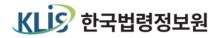




権利並びに同項第十六号に掲 げる有価証券、同項第十七号 に掲げる有価証券(同項第十 六号に掲げる有価証券の性質 を有するものに限る。)及び 同項第十九号から第二十一号 までに掲げる有価証券であつ て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に表 示されるべき権利(以下この 項及び次項において「有価証 券表示権利」と総称する。) は、有価証券表示権利につい て当該権利を表示する当該有 価証券が発行されていない場 合においても、当該権利を当 該有価証券とみなし、電子記 録債権(電子記録債権法(平 成十九年法律第百二号) 第二 条第一項に規定する電子記録 債権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 いて同じ。) のうち、流通性 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社債 券その他の前項各号に掲げる 有価証券とみなすことが必要 と認められるものとして政令 で定めるもの(第七号及び次 項において「特定電子記録債 権」という。)は、当該電子 記録債権を当該有価証券とみ なし、次に掲げる権利は、証 券又は証書に表示されるべき

가증권. 제1항제17호의 유가 증권(제1항제16호의 유가증 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항제19호부 터 제21호까지의 유가증권으 로서 내각부렁으로 정하는 것 에 표시되어야 하는 권리(이 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유가 증권 표시권리"라 한다)는 유 가증권 표시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해당 권리를 그 유가증권으 로, 전자기록채권[「전자기록 채권법」(평성19<2007>년 법률 제102호)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유 통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 여 사채권, 그 밖의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 령으로 정하는 것(제7호 및 제3항에서 "특정전자기록채 권"이라 한다)은 해당 전자기 록채권을 유가증권으로, 다음 의 권리는 증권 또는 증서에 표시되어야 하는 권리 외의 권리라도 유가증권으로 보아 이 법 규정을 적용한다.





権利以外の権利であつても有価証券とみなして、この法律の規定を適用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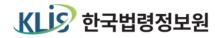
- 一 信託の受益権(前項第十 号に規定する投資信託の受 益証券に表示されるべきも の及び同項第十二号から第 十四号までに掲げる有価証 券に表示されるべきものを 除く。)
- 二 外国の者に対する権利で 前号に掲げる権利の性質を 有するもの(前項第十号に 規定する外国投資信託の受 益証券に表示されるべきも の並びに同項第十七号及び 第十八号に掲げる有価証券 に表示されるべきものに該 当するものを除く。)
- 三 合名会社若しくは合資会 社の社員権(政令で定める ものに限る。)又は合同会 社の社員権

四 外国法人の社員権で前号に掲げる権利の性質を有するもの

五 民法 (明治二十九年法律 第八十九号) 第六百六十七 条第一項に規定する組合契 約、商法 (明治三十二年法 律第四十八号) 第五百三十

- 1. 신탁의 수익권(제1항제 10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 익증권에 표시되어야 하는 것 및 제1항제12호부터 제 14호까지의 유가증권에 표 시되어야 하는 것을 제외한 다)
- 2. 외국인에 대한 권리로서 제1호의 권리의 성질을 가지는 것(제1항제10호에 따른 외국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표시되어야하는 것, 제1항제17호 및 제18호의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하는 것의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3.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권(정령으로 정하는 것 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동 회사의 사원권
- 4. 외국법인의 사원권으로 서 제3호의 권리의 성질을 가지는 것
- 5. 「민법」(명치 29<1896>년 법률 제89호) 제667조제1항에 따른 조합 계약, 「상법」(명치 32<1899>년 법률 제48호)





五条に規定する匿名組合契 約、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 契約に関する法律(平成十 年法律第九十号) 第三条第 一項に規定する投資事業有 限責任組合契約又は有限責 任事業組合契約に関する法 律(平成十七年法律第四十 号) 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 る有限責任事業組合契約に 基づく権利、社団法人の社 員権その他の権利(外国の 法令に基づくものを除く 。)のうち、当該権利を有 する者(以下この号におい て「出資者」という。)が 出資又は拠出をした金銭 (これに類するものとして 政令で定めるものを含む 。)を充てて行う事業(以 下この号において「出資対 象事業」という。) から生 ずる収益の配当又は当該出 資対象事業に係る財産の分 配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権 利であつて、次のいずれに も該当しないもの(前項各 号に掲げる有価証券に表示 される権利及びこの項(こ の号を除く。)の規定によ り有価証券とみなされる権

제535조에 따른 익명조합계 약, 「투자사업 유한책임조 합계약에 관한 법률」(평성 10<1998>년 법률 제90호)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사 업 유한책임조합계약 또는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관한 법률」(평성 17<2005>년 법률 제40호) 제3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 임사업조합계약에 따른 권 리, 사단법인의 사원권, 그 밖의 권리(외국 법령에 따 르는 것을 제외한다) 중 해 당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호에서 "출자자"라 한다)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금전(이 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령으 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을 충당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하 이 호에서 "출자대상 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 하는 수익의 배당 또는 해 당 출자대상사업과 관련된 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 는 권리 및 이 항(제5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유가증권 으로 보는 권리를 제외한





利を除く。)

イ 出資者の全員が出資対象 事業に関与する場合として 政令で定める場合における 当該出資者の権利

ロ 出資者がその出資又は拠 出の額を超えて収益の配当 又は出資対象事業に係る財 産の分配を受けることがな いことを内容とする当該出 資者の権利(イに掲げる権 利を除く。)

ハ 保険業法 (平成七年法律 第百五号) 第二条第一項に 規定する保険業を行う者が 保険者となる保険契約、農 業協同組合法(昭和二十二 年法律第百三十二号)第十 条第一項第十号に規定する 事業を行う同法第四条に規 定する組合と締結した共済 契約、消費生活協同組合法 (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百 号) 第十条第二項に規定す る共済事業を行う同法第四 条に規定する組合と締結し た共済契約、水産業協同組 合法 (昭和二十三年法律第 二百四十二号)第十一条第 一項第十一号、第九十三条 第一項第六号の二若しくは

다]

가. 출자자 전원이 출자대상 사업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해당 출자자의 권리 나. 출자자가 그 출자 또는 출연액을 초과하여 수익 배당 또는 출자대상사업과 관련된 재산 분배를 받지 아니함을 내용으로 하는 해당 출자자의 권리(가의 권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평성 7<1995>년 법률 제105 호) 제2조제1항에 따른 보 험업을 하는 자가 보험자 가 되는 보험계약. 「농업 협동조합법」(소화 22<1947>년 법률 제132 호)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동법 제 4조에 따른 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 「소비생활협동 조합법」(소화23<1948> 년 법률 제200호)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동법 제4조에 따른 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 「수산업협동조합법」(소 화23<1948>년 법률 제 242호) 제11조제1항제11





第百条の二第一項第一号に 規定する事業を行う同法第 二条に規定する組合と締結 した共済契約、中小企業等 協同組合法 (昭和二十四年 法律第百八十一号) 第九条 の二第七項に規定する共済 事業を行う同法第三条に規 定する組合と締結した共済 契約又は不動産特定共同事 業法 (平成六年法律第七十 七号) 第二条第三項に規定 する不動産特定共同事業契 約(同条第九項に規定する 特例事業者と締結したもの を除く。) に基づく権利 (イ及びロに掲げる権利を 除く。)

ニ 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権利を有価証券とみなさなくても公益又は出資者の保護のため支障を生ずることがないと認められ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権利

六 外国の法令に基づく権利 であつて、前号に掲げる権 利に類するもの

七特定電子記録債権及び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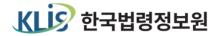
호. 제93조제1항제6호의2 나 제100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사업을 하는 동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체결 한 공제계약, 「중소기업등 협동조합법」(소화 24<1949>년 법률 제181 호)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동법 제3 조에 따른 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 또는 「부동산특 정공동사업법」(평성 6<1994>년 법률 제77호) 제2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특정공동사업계약(동조 제 9항에 따른 특례사업자와 체결한 것을 제외한다)에 따른 권리(가 및 나의 권 리를 제외하다)

라. 가부터 다까지 외에 해당 권리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지 아니하여도 공익 또는 출자자의 보호로 인하여 지장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권리

6. 외국 법령에 따른 권리 로서 제5호의 권리와 유사 한 것

7. 특정전자기록채권 및 제





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 前項に規定する有価証券及 が前各号に掲げる権利と同 様の経済的性質を有するこ をの他の事情を勘案した 有価証券とみなするとに護 の公益又は投資者の保護 確保することが必要かし 政令で定める権利

(次項及び第六項、次条第四項及び第五項並びに第二十三条の十三第四項において「第一項有価証券」という。)に係るもの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場合、当該取得勧誘が前項の

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 하는 것 외에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및 제1호부터 제6 호까지의 권리와 같은 경제 적 성질, 그 밖의 사정을 감 안하여 유가증권으로 간주 함으로써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 하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권리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 집"은 새로이 발행되는 유가 증권의 취득 신청 권유[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내각부렁으 로 정하는 것(제4항에서 "취 득권유 유사행위"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취득권유"라 한다] 중 그 취득권유가 제1 항의 유가증권 또는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유가증권표시권리나 특정전자 기록채권(제4항 및 제6항, 제 2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23 조의13제4항에서 "제1항 유 가증권"이라 한다)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 호의 경우, 해당 취득권유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동항 각 호의 권리 (제4항. 제2조의2제4항 및





規定により有価証券とみなさ れる同項各号に掲げる権利

(次項、次条第四項及び第五 項並びに第二十三条の十三第 四項において「第二項有価証 券」という。)に係るもので ある場合にあつては第三号に 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ものを いい、「有価証券の私募」と は、取得勧誘であつて有価証 券の募集に該当しないものを いう。

一 多数の者 (適格機関投資 家(有価証券に対する投資 に係る専門的知識及び経験 を有する者として内閣府令 で定める者をいう。以下同 じ。) が含まれる場合であ つて、当該有価証券がその 取得者である適格機関投資 家から適格機関投資家以外 の者に譲渡されるおそれが 少ないものとして政令で定 める場合に該当するときは 、当該適格機関投資家を除 く。)を相手方として行う 場合として政令で定める場 合(特定投資家のみを相手 方とする場合を除く。)

二前号に掲げる場合のほか

제5항, 제23조의13제4항에서 "제2항 유가증권"이라 한다) 와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제3 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사모"란 취득권유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다수인[적격기관투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 및 경 험을 가진 자로서 내각부렁 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는 경 우로서 해당 유가증권이 그 취득자인 적격기관투자가로 부터 적격기관투자가 외의 자에게 양도될 우려가 적은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적격기관투자가를 제외한 다]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 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 우(오로지 특정투자가를 상 대방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 하다)
- 2. 제1호의 경우 외에 다음





- 、次に掲げる場合のいずれ にも該当しない場合
- イ 適格機関投資家のみを相 手方として行う場合であつ て、当該有価証券がその取 得者から適格機関投資家以 外の者に譲渡されるおそれ が少ないものとして政令で 定める場合
- ロ 特定投資家のみを相手方として行う場合であつて、 次に掲げる要件の全てに該 当するとき(イに掲げる場合を除く。)。

 - (2) 当該有価証券がその取得者から特定投資家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 오로지 적격기관투자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유가증권이 그취득자로부터 적격기관투자가 외의 자에게 양도될 우려가 적은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나. 오로지 특정투자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로서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때(가의 경우를 제외한다)
 - (1) 해당 취득권유의 상대 방이 국가, 일본은행 및 적격기관투자가 외의 자 인 경우에는 금융상품거 래업자 등(제34조에 따 른 금융상품거래업자 등 을 말한다. 제4항, 제4 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27조의32의2, 제27조 의34의2에서 같다)이 고객의 위탁에 따라 또 는 자기를 위하여 해당 취득권유를 할 것
 - (2) 해당 유가증권이 그 취득자로부터 특정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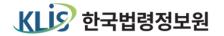


- 三 その取得勧誘に応じることにより相当程度多数の者が当該取得勧誘に係る有価証券を所有することとなる場合として政令で定める場合
- 4 この法律において「有価証

가 등[특정투자가 또는 비거주자{「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소화 24<1949>년 법률 제 228호) 제6조제1항제6 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정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말한 다. 이하 같다] 외의 자 에게 양도될 우려가 적 은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 다. 제1호, 가 및 나 외의 경우(해당 유가증권과 종 류를 같이 하는 유가증권 의 발행 및 권유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해당 유가증권이 다수인에게 소유될 우려가 적은 것으로 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그 취득권유에 따름으로 써 상당한 정도의 다수인 이 해당 취득권유와 관련 된 유가증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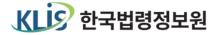


券の売出し」とは、既に発行された有価証券の売付けの申込み又はその買付けの申込みの勧誘(取得勧誘類似行為に該当するもの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以下

2차 분매"라 이미 발행된 유 가증권의 매도 신청 또는 그 매수 신청의 권유(취득권유 유사행위에 해당하는 것,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제외한다. 이하 "매도권유 등"이라 한다) 중 해당 매도 권유 등이 제1항 유가증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 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 해당 매도권유 등이 제2항 유 가증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 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거 래소 금융상품시장의 유가증 권의 매매 및 이에 준하는 거 래,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것 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다수인(적격기관투자가 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유가증권이 그 취득자인 적격기관투자가로부터 적격기 관투자가 외의 자에게 양도될 우려가 적은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적격기관투자가를 제외한다)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오로지





(特定投資家のみを相手方 とする場合を除く。)

- 二 前号に掲げる場合のほか 、次に掲げる場合のいずれ にも該当しない場合
- イ 適格機関投資家のみを相 手方として行う場合であつ て、当該有価証券がその取 得者から適格機関投資家以 外の者に譲渡されるおそれ が少ないものとして政令で 定める場合
- ロ 特定投資家のみを相手方として行う場合であつて、 次に掲げる要件の全てに該 当するとき(イに掲げる場合を除く。)。
 - (1) 当該売付け勧誘等の相手方が国、日本銀行及び適格機関投資家以外の者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金融商品取引業者等が顧客からの委託により又は自己のために当該売付け勧誘等を行うこと。
 - (2) 当該有価証券がその取得者から特定投資家等以外の者に譲渡されるおそれが少ない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

- 특정투자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 오로지 적격기관투자가 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로서 해당 유가증권이 그 취득자로부터 적격기관투 자가 외의 자에게 양도될 우려가 적은 것으로서 정 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오로지 특정투자가를 상 대방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가의 경우를 제외한다)
 - (1) 해당 매도권유 등의 상대방이 국가, 일본은 행 및 적격기관투자가 외의 자인 경우에는 금 융상품거래업자 등이 고 객의 위탁에 따라 또는 자기를 위하여 해당 매 도권유 등을 할 것
- (2) 해당 유가증권이 그 취 독자로부터 특정투자가 등 외의 자에게 양도될 우려가 적은 것으로서 정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 당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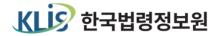




- ハ 前号に掲げる場合並びに イ及び口に掲げる場合と類 の場合(当該有価証券と種類を同じくする有価証券の 発行及び勧誘の状況等を勘 案して政令で定める要件に 該当する場合を除く。)が あつて、当該有価証券が 数の者に所有されるおそれが が少ないものとして政令で 定める場合
- 三 その売付け勧誘等に応じることにより相当程度多数の者が当該売付け勧誘等に係る有価証券を所有することとなる場合として政令で定める場合

- 다. 제1호, 가 및 나의 경우 외의 경우(해당 유가증권 과 종류를 같이 하는 유가 증권의 발행 및 권유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해 당 유가증권이 다수에게 소유될 우려가 적은 것으 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 우
- 3. 그 매도권유 등에 따름 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다수 인이 해당 매도권유 등에 관한 유가증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 하는 경우
- ⑤ 이 법에서 "발행자"란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발행하려는 자(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고, 증권 또는 증서에 표시되어야할 권리 외의 권리로서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권리의 종류마다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 권리를 유가증권으로 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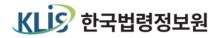




- - 一 当該有価証券を取得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当該有価証券の全部又は一部を取得すること。
 - 二 当該有価証券の全部又は 一部につき他にこれを取得 する者がない場合にその残 部を取得することを内容と する契約をすること。
 - 三 当該有価証券が新株予約 権証券(これに準ずるもの 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有 価証券を含む。以下この号 において同じ。)である場 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 権証券を取得した者が当該

- ⑥ 이 법(제5장을 제외한다)에서 "인수인"이란 유가증권의 모집, 제2차 분매 또는 사모나 특정투자가 대상 매도권유 등[제1항 유가증권에 관한매도권유 등으로서 제4항제2호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거래소 금융상품시장의 유가증권의 매매 및 이에 준하는 거래,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때에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1.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하 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취득
 - 2. 해당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3. 해당 유가증권이 신주예 약권증권(이에 준하는 것으 로서 내각부렁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경우에 해당 신주예약권증권을 취 득한 자가 그 신주예약권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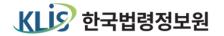
7 この法律において「有価証 券届出書」とは、第五条第一 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 する場合を含む。以下同じ 。)の規定による届出書及び 同条第十三項の規定によりこ れに添付する書類並びに第七 条第一項、第九条第一項又は 第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訂 正届出書をいう。

8 この法律において「金融商 品取引業」とは、次に掲げる 行為(その内容等を勘案し、 投資者の保護のため支障を生 ずることがないと認められる 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及び銀行、優先出資法第二条 第一項に規定する協同組織金融 融機関(以下「協同組織金融 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주예약권(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 그 행사하지 아니하는 데에 그 행사하지 아니하는 신주예약권을 취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해당 신주예약권을 행사함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⑦ 이 법에서 "유가증권신고 서"란 제5조제1항(동조 제5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신 고서 및 동조 제13항에 따라 이에 첨부하는 서류, 제7조제 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0 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금융상품거래 업"이란 다음의 행위[그 내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로 인하여 지장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및 은 행, 「우선출자법」 제2조제1 항에 따른 협동조직금융기관 (이하 "협동조직금융기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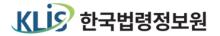
機関」という。)その他政令 で定める金融機関が行う第十 二号、第十四号、第十五号又 は第二十八条第八項各号に掲 げるものを除く。)のいずれ かを業として行うことをいう

- 一 有価証券の売買(デリバ ティブ取引に該当するもの を除く。以下同じ。)、市 場デリバティブ取引(金融 商品(第二十四項第三号の 二に掲げるものに限る。) 又は金融指標(当該金融商 品の価格及びこれに基づい て算出した数値に限る。) に係る市場デリバティブ取 引(以下「商品関連市場デ リバティブ取引」という 。)を除く。)又は外国市 場デリバティブ取引(有価 証券の売買にあつては、第 十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 。)
- 二 有価証券の売買、市場デリバティブ取引又は外国市場デリバティブ取引の媒介、取次ぎ(有価証券等清算取次ぎを除く。)又は代理(有価証券の売買の媒介、取次ぎ又は代理にあつては

라 한다),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하는 제 12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8조제8항 각 호를 제외한 다) 중 어느 하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1. 유가증권의 매매(파생상 품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장내 파생상품 거래[금융상품(제 24항제3호의2로 한정한다) 또는 금융지표(해당 금융상 품의 가격 및 이에 근거하 여 산출한 수치로 한정한 다)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 거래(이하 "상품관련 장내 파생상품 거래"라 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해외 장내 파생상품 거래(유가증권 매 매의 경우에는 제10호에 해 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 유가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 거래 또는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매개, 중개(유가증권 등 청산 중개를 제외한다) 또는 대리(유가증권 매매의 매개, 중개또는 대리의 경우에는 제10





、第十号に掲げるものを除 く。)

三 次に掲げる取引の委託の 媒介、取次ぎ又は代理 イ 取引所金融商品市場にお ける有価証券の売買又は市

場デリバティブ取引

ロ 外国金融商品市場(取引 所金融商品市場に類似する 市場で外国に所在するもの をいう。以下同じ。)にお ける有価証券の売買又は外 国市場デリバティブ取引

四 店頭デリバティブ取引又はその媒介、取次ぎ(有価証券等清算取次ぎを除く。)若しくは代理(以下「店頭デリバティブ取引等」という。)

五 有価証券等清算取次ぎ 六 有価証券の引受け(有価 証券の募集若しくは売出し 又は私募若しくは特定投資 家向け売付け勧誘等に際し 、第六項各号に掲げるもの のいずれかを行うことをい う。)

七 有価証券 (次に掲げるも のに限る。) の募集又は私 募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다음 거래 위탁의 매개, 중개 또는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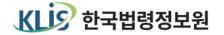
가. 거래소 금융상품시장에 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또 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나. 해외금융상품시장(거래 소 금융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소재하 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서의 유가증권의 매 매 또는 해외 시장파생상 품 거래

4. 장외파생상품 거래 또는 그 매개, 중개(유가증권 등 청산 중개를 제외한다)나 대리(이하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이라 한다)

5. 유가증권 등 청산 중개 6. 유가증권의 인수(유가증 권의 모집이나 제2차 분매 또는 사모나 특정투자가 대 상 매도 권유 등을 할 때에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 위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7. 유가증권(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모 집 또는 사모





- イ 第一項第十号に規定する 投資信託の受益証券のうち 、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 関する法律第二条第一項に 規定する委託者指図型投資 信託の受益権に係るもの
- ロ 第一項第十号に規定する 外国投資信託の受益証券 ハ 第一項第十六号に掲げる 有価証券
- ニ 第一項第十七号に掲げる 有価証券のうち、同項第十 六号に掲げる有価証券の性 質を有するもの
- ホ イ若しくは口に掲げる有 価証券に表示されるべき権 利又はハ若しくは二に掲げる 有価証券のうち内閣府令 で定めるものに表示される べき権利であつて、第二項 の規定により有価証券とみ なされるもの
- へ 第二項の規定により有価 証券とみなされる同項第五 号又は第六号に掲げる権利 トイからへまでに掲げるも ののほか、政令で定める有 価証券
- 八 有価証券の売出し又は特定投資家向け売付け勧誘等

- 가. 제1항제10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중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 지도형 투자신탁의 수익권과 관련된 것
- 나. 제1항제10호에 따른 외 국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다. 제1항제16호의 유가증 권
- 라. 제1항제17호의 유가증 권 중 동항 제16호의 유가 증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
- 마. 가, 나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하는 권리 또는다, 라의 유가증권 중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으로보는 것
- 바.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으로 보는 동항 제5호 또 는 제6호의 권리 사. 가부터 바까지 외에 정 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 8. 유가증권의 제2차 분매 또는 특정투자가 대상 매도





九 有価証券の募集若しくは 売出しの取扱い又は私募若 しくは特定投資家向け売付 け勧誘等の取扱い

十 有価証券の売買又はその 媒介、取次ぎ若しくは代理 であつて、電子情報処理組 織を使用して、同時に多数 の者を一方の当事者又は各 当事者として次に掲げる売 買価格の決定方法又はこれ に類似する方法により行う もの(取り扱う有価証券の 種類等に照らして取引所金 融商品市場又は店頭売買有 価証券市場 (第六十七条第 二項に規定する店頭売買有 価証券市場をいう。) 以外 において行うことが投資者 保護のため適当でないと認 められるものとして政令で 定めるものを除く。)

イ 競売買の方法(有価証券 の売買高が政令で定める基 準を超えない場合に限る 。)

ロ 金融商品取引所に上場されている有価証券について、当該金融商品取引所が開設する取引所金融商品市場

권유 등

9. 유가증권의 모집, 제2차 분매의 처리 또는 사모나 특정투자가 대상 매도권유 등의 처리

10.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 용하여 동시에 다수인을 일 방 당사자 또는 각 당사자 로 하여 다음의 매매 가격 결정 방법 또는 이와 유사 한 방법으로 하는 유가증권 의 매매 또는 매개, 중개나 대리[처리하는 유가증권의 종류 등에 비추어 거래소 금융상품시장 또는 장외매 매 유가증권시장(제67조제2 항에 따른 장외매매 유가증 권시장을 말한다) 외에서 이행하는 것이 투자자보호 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 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다]

가. 경매매 방법(유가증권의 매매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 된 유가증권에 대하여 해 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거 래소 금융상품시장의 유가





における当該有価証券の売 買価格を用いる方法

- ハ 第六十七条の十一第一項 の規定により登録を受けた 有価証券(以下「店頭売買 有価証券」という。)につ いて、当該登録を行う認可 金融商品取引業協会が公表 する当該有価証券の売買価 格を用いる方法
- ニ 顧客の間の交渉に基づく 価格を用いる方法
- ホ イからニまでに掲げるも ののほか、内閣府令で定め る方法

十一 当事者の一方が相手方 に対して次に掲げるものに 関し、口頭、文書(新聞、 雑誌、書籍その他不特定多 数の者に販売することを目 的として発行されるもので 、不特定多数の者により随 時に購入可能なものを除く 。) その他の方法により助 言を行うことを約し、相手 方がそれに対し報酬を支払 うことを約する契約(以下 「投資顧問契約」という 。)を締結し、当該投資顧 問契約に基づき、助言を行 うこ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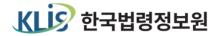
증권의 매매가격을 이용하 는 방법

다. 제67조의11제1항에 따라 등록된 유가증권(이하 "장외매매 유가증권"이라한다)에 대하여 등록을 실시하는 인가금융상품거래업협회가 공표하는 해당유가증권의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라. 고객간 교류에 따른 가 격을 이용하는 방법 마. 가부터 라까지 외에 내 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11.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다음에 관하여 구두, 문서(신문, 잡지, 서적, 그밖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조언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투자자문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투자자문계약에 따라 조언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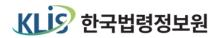




イ 有価証券の価値等(有価 証券の価値、有価証券関連 オプション(金融商品市場 において金融商品市場を開 設する者の定める基準及び 方法に従い行う第二十八条 第八項第三号ハに掲げる取 引に係る権利、外国金融商 品市場において行う取引で あつて同号ハに掲げる取引 と類似の取引に係る権利又 は金融商品市場及び外国金 融商品市場によらないで行 う同項第四号ハ若しくはニ に掲げる取引に係る権利を いう。)の対価の額又は有 価証券指標(有価証券の価 格若しくは利率その他これ に準ずるものとして内閣府 令で定めるもの又はこれら に基づいて算出した数値を いう。)の動向をいう。) ロ金融商品の価値等(金融 商品(第二十四項第三号の 二に掲げるものにあつては 、金融商品取引所に上場さ れているものに限る。)の 価値、オプションの対価の 額又は金融指標(同号に掲 げる金融商品に係るものに あつては、金融商品取引所

가. 유가증권의 가치 등[유 가증권의 가치, 유가증권 관련 옵션(금융상품시장에 서 금융상품시장을 개설하 는 자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제28조제8항 제3호의다의 거래와 관련 된 권리, 해외금융상품시장 에서 하는 거래로서 동호 의다의 거래와 유사한 거 래와 관련된 권리 또는 금 융상품시장 및 해외금융상 품시장에 따르지 아니하는 동항 제4호의다 또는 라의 거래와 관련된 권리를 말 한다)의 가치액 또는 유가 증권지표(유가증권의 가격 이나 이자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내각부령 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이에 기초하여 산출한 수치를 말한다)의 동향을 말한다] 나. 금융상품의 가치 등[금 융상품(제24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 품거래소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가치, 옵션의 대가액 또는 금융지표(제3 호의2의 금융상품과 관련 된 경우에는 금융상품거래 소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





に上場されているものに限 る。)の動向をいう。以下 同じ。)の分析に基づく投 資判断(投資の対象となる 有価証券の種類、銘柄、数 及び価格並びに売買の別、 方法及び時期についての判 断又は行うべきデリバテつ で取引の内容及び時期についての判断をいう。以下同 じ。)

十二 次に掲げる契約を締結 し、当該契約に基づき、金 融商品の価値等の分析に基 づく投資判断に基づいて有 価証券又はデリバティブ取 引に係る権利に対する投資 として、金銭その他の財産 の運用(その指図を含む。 以下同じ。)を行うこと。 イ 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 関する法律第二条第十三項 に規定する登録投資法人と 締結する同法第百八十八条 第一項第四号に規定する資 産の運用に係る委託契約 ロイに掲げるもののほか、 当事者の一方が、相手方か ら、金融商品の価値等の分 析に基づく投資判断の全部 又は一部を一任されるとと

한다)의 동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투자의 대상이되는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및 가격, 매매구분, 방법및 시기에 대한 판단또는 하여야하는 파생상품 거래의 내용 및 시기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같다)

12.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 거래와관련된 권리에 대한 투자로서 금전, 그 밖의 재산의 운용(지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가.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 항에 따른 등록투자법인과 체결하는 동법 제188조제1 항제4호에 따른 자산 운용 과 관련된 위탁계약 나. 가에 해당하는 것 외에 당사자 일방이 금융상품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하게 되고 해당





もに、当該投資判断に基づ き当該相手方のため投資を 行うのに必要な権限を委任 されることを内容とする契 約(以下「投資一任契約」 という。)

十三 投資顧問契約又は投資 一任契約の締結の代理又は 媒介

十四金融商品の価値等の分析に基づく投資判断に基づく投資判断に基づいて有価証券又はデリバティブ取引に係る権利に対する投資として、第一項第十一会に掲げる有価証券にある権利を有するとのとの対産の運用を行うた金銭そのの第十二号に掲げる行為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

十五 金融商品の価値等の分析に基づく投資判断に基づいて主として有価証券又は デリバティブ取引に係る権利に対する投資として、次に掲げる権利その他政令で 定める権利を有する者から 出資又は拠出を受けた金銭 その他の財産の運用を行うこと (第十二号及び前号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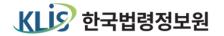
투자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위하여 투자하는 데에 필 요한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13.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

14. 금융상품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 품 거래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투자로서 제1항제10호 의 유가증권에 표시되는 권 리,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 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출연받은 금전, 그 밖의 재 산의 운용(제1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5. 금융상품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에 따라 주로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권 리에 대한 투자로서 다음의 권리, 그 밖에 정령으로 정 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출자 또는 출연받은 금전, 그 밖의 재산의 운용(제12 호 및 제14호의 행위에 해





掲げる行為に該当するもの を除く。)。

イ 第一項第十四号に掲げる 有価証券又は同項第十七号 に掲げる有価証券(同項第 十四号に掲げる有価証券の 性質を有するものに限る

- 。) に表示される権利
- ロ 第二項第一号又は第二号 に掲げる権利
- ハ 第二項第五号又は第六号 に掲げる権利

十六 その行う第一号から第 十号までに掲げる行為に関 して、顧客から金銭又は第 一項各号に掲げる証券若し くは証書の預託を受けるこ と(商品関連市場デリバテ ィブ取引についての第二号 、第三号又は第五号に掲げ る行為を行う場合にあつて は、これらの行為に関して 、顧客から商品(第二十四 項第三号の二に掲げるもの 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 て同じ。) 又は寄託された 商品に関して発行された証 券若しくは証書の預託を受 けることを含む。)。

十七 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平成十三年法

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제1항제14호의 유가증 권 또는 동항 제17호의 유 가증권(동항 제14호의 유 가증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표시 되는 권리

나.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의 권리

다.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 의 권리

16. 제1호부터 제10호의 행위에 관하여 고객의 금전 또는 제1항 각 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예탁[상품 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대한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행위에 관하여 고객이 상품(제24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 또는 기탁된 상품에 관하여 발행된 증권이나 증서를 예탁하는 것을 포함한다]

17. 「사채, 주식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평성





律第七十五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社債等の振替を行うために口座の開設を受けて社債等の振替を行うこと。

十八 前各号に掲げる行為に 類す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 める行為

9 この法律において「金融商品取引業者」とは、第二十九条の規定により内閣総理大臣の登録を受けた者をいう。

10 この法律において「目論 見書」とは、有価証券の募集 若しくは売出し、第四条第二 項に規定する適格機関投資家 取得有価証券一般勧誘(有価 証券の売出しに該当するもの を除く。) 又は同条第三項に 規定する特定投資家等取得有 価証券一般勧誘(有価証券の 売出し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 。)のために当該有価証券の 発行者の事業その他の事項に 関する説明を記載する文書で あつて、相手方に交付し、又 は相手方からの交付の請求が あつた場合に交付するものを いう。

11 この法律において「金融商品仲介業」とは、金融商品

13<2001>년 법률 제75호)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채(社 債) 등의 이전을 위하여 계 좌 개설을 받아 사채 등을 이전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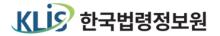
18. 제1호부터 제17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

⑨ 이 법에서 "금융상품거래 업자"란 제29조에 따라 내각 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⑩ 이 법에서 "계획서"란 유 가증권의 모집이나 제2차 분 매.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격 기관투자가 취득유가증권 일 반권유(유가증권의 제2차분매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동조 제3항에 따른 특정 투자가등 취득유가증권 일반 권유(유가증권의 제2차 분매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를 위하여 해당 유가증권 발 행자의 사업,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는 문서로 서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상 대방의 교부 청구가 있는 경 우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법에서 "금융상품중개 업"이란 금융상품거래업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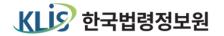


- 一 有価証券の売買の媒介 (第八項第十号に掲げるも のを除く。)
- 二 第八項第三号に規定する 媒介
- 三 第八項第九号に掲げる行為
- 四 第八項第十三号に規定する媒介
- 12 この法律において「金融 商品仲介業者」とは、第六十 六条の規定により内閣総理大 臣の登録を受けた者をいう。
- 13 この法律において「認可金融商品取引業協会」とは、

28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금 융상품거래업 또는 동조 제4 항에 따른 투자운용업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 또는 등록금 융기관(제33조의2의 등록을 받은 은행, 협동조합금융기관,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금 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위탁을 받아 다음의 행위 (제28조제4항에 따른 투자운 용업을 하는 자의 제4호의 행 위를 제외한다) 중 하나를 해 당 금융상품거래업자 또는 등 록금융기관을 위하여 하는 업 무를 말한다.

- 1. 유가증권 매매의 매개 (제8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 제8항제3호에 따른 매개
- 3. 제8항제9호의 행위
- 4. 제8항제13호에 따른 매 개
- ② 이 법에서 "금융상품중개 업자"란 제66조에 따라 내각 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인가금융상품 거래업협회"란 제4장제1절제





第四章第一節第一款の規定に 基づいて設立された者をいう

14 この法律において「金融商品市場」とは、有価証券の売買又は市場デリバティブ取引を行う市場(商品関連市場デリバティブ取引のみを行うものを除く。)をいう。

15 この法律において「金融商品会員制法人」とは、金融商品市場の開設を目的として第五章第二節第一款の規定に基づいて設立された会員組織の社団をいう。

16 この法律において「金融 商品取引所」とは、第八十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り内閣総理 大臣の免許を受けて金融商品 市場を開設する金融商品会員 制法人又は株式会社をいう。

17 この法律において「取引 所金融商品市場」とは、金融 商品取引所の開設する金融商 品市場をいう。

18 この法律において「金融商品取引所持株会社」とは、取引所金融商品市場を開設する株式会社(以下「株式会社金融商品取引所」という。)を子会社(第八十七条の三第

1관에 따라 설립된 자를 말한 다.

④ 이 법에서 "금융상품시장" 이란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시 장(상품 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만을 하는 것을 제외한 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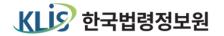
① 이 법에서 "금융상품회원 제법인"이란 금융상품시장의 개설을 목적으로 제5장제2절 제1관에 따라 설립된 회원조 직사단을 말한다.

16 이 법에서 "금융상품거래 소"란 제80조제1항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아 금융상품시장을 개설하는 금 융상품회원제법인 또는 주식 회사를 말한다.

① 이 법에서 "거래소 금융상 품시장"이란 금융상품거래소 가 개설하는 금융상품시장을 말한다.

® 이 법에서 "금융상품거래 소 주식회사"란 거래소 금융 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주식회 사(이하 "주식회사 금융상품 거래소"라 한다)를 자회사(제 87조의3제3항에 따른 자회사





三項に規定する子会社をいう。)とする株式会社であつて、第百六条の十第一項の規定により内閣総理大臣の認可を受けて設立され、又は同項若しくは同条第三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内閣総理大臣の認可を受けているものをいう。

19 この法律において「取引 参加者」とは、第百十二条第 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第百 十三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 の規定による取引資格に基づ き、取引所金融商品市場にお ける有価証券の売買又は市場 デリバティブ取引に参加でき る者をいう。

20 この法律において「デリバティブ取引」とは、市場デリバティブ取引、店頭デリバティブ取引又は外国市場デリバティブ取引をいう。

21 この法律において「市場 デリバティブ取引」とは、金 融商品市場において、金融商 品市場を開設する者の定める 基準及び方法に従い行う次に 掲げる取引をいう。

一 売買の当事者が将来の一 定の時期において金融商品 及びその対価の授受を約す 를 말한다)로 하는 주식회사 로서 제106조의10제1항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 아 설립되거나 제1항이나 동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내각총 리대신의 인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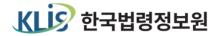
⑨ 이 법에서 "거래참여자"란 제112조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11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거래 자격에 따라 거래소 금융상품시장의 유가증권 매매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파생상품 거 래"란 장내파생상품 거래, 장 외파생상품 거래 또는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 거래"란 금융상품시장에서 금융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 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다음의 거래를 말한다.

1. 매매 당사자가 장래의 일정 시기에 금융상품 및 그 대가의 수수를 약정하는





三 当事者の一方の意思表示 により当事者間において次 に掲げる取引を成立させる ことができる権利を相手方 が当事者の一方に付与し、 当事者の一方がこれに対し て対価を支払うことを約す る取引

イ 金融商品の売買(第一号に掲げる取引を除く。)

ロ 前二号及び次号から第六 号までに掲げる取引(前号 又は第四号の二に掲げる取 引に準ずる取引で金融商品 取引所の定めるものを含む 。)

四 当事者が元本として定め

매매로서 해당 매매의 목적 인 금융상품의 전매 또는 환매를 한 때에는 차액 수 수로 결제할 수 있는 거래

2. 당사자가 사전에 금융지 표로 약정하는 수치(이하 "약정수치"라 한다)와 장래 의 일정 시기의 실제 금융 지표의 수치(이하 "실제수 치"라 한다)의 차에 근거하 여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3.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당사자 간에 다음의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당사자가이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하는 거래

가. 금융상품의 매매(제1호의 거래를 제외한다) 나.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거래 (제2호 또는 제4호의2의 거래에 준하는 거래로서 금융상품거래소가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당사자가 원본으로 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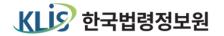
た金額について当事者の一 方が相手方と取り決めた金 融商品(第二十四項第三号 及び第三号の二に掲げるも のを除く。)の利率等(利 率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 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も のをいう。以下同じ。)又 は金融指標(金融商品(こ れらの号に掲げるものを除 く。)の利率等及びこれに 基づいて算出した数値を除 く。以下この号及び次項第 五号において同じ。)の約 定した期間における変化率 に基づいて金銭を支払い、 相手方が当事者の一方と取 り決めた金融商品(第二十 四項第三号及び第三号の二 に掲げるものを除く。)の 利率等又は金融指標の約定 した期間における変化率に 基づいて金銭を支払うこと を相互に約する取引(これ らの金銭の支払とあわせて 当該元本として定めた金額 に相当する金銭又は金融商 品を授受することを約する ものを含む。)

四の二 当事者が数量を定めた金融商品(第二十四項第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 이 상대방과 결정한 금융상 품(제24항제3호 및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의 이율 등(이율,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내각부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 육지표[금융상품(제24항제3 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이율 등 및 이에 기초하여 산출한 수치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2호제5호에서 같 다]가 약정한 기간의 변화 율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 하고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 과 결정한 금융상품(제24항 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이 율 등 또는 금융지표가 약 정한 기간의 변화율에 기초 하여 금전 지급을 상호 약 정한 거래(이들 금전 지급 과 더불어 해당 원본으로 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금융상품의 수수를 약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4의2. 당사자가 수량을 정 한 금융상품(제24항제3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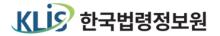
三号の二に掲げるものに限 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 じ。) について当事者の一 方が相手方と取り決めた当 該金融商品に係る金融指標 の約定した期間における変 化率に基づいて金銭を支払 い、相手方が当事者の一方 と取り決めた当該金融指標 の約定した期間における変 化率に基づいて金銭を支払 うことを相互に約する取引 五 当事者の一方が金銭を支 払い、これに対して当事者 があらかじめ定めた次に掲 げるいずれかの事由が発生 した場合において相手方が 金銭を支払うことを約する 取引(当該事由が発生した 場合において、当事者の一 方が金融商品、金融商品に 係る権利又は金銭債権(金 融商品であるもの及び金融 商品に係る権利であるもの を除く。)を移転すること を約するものを含み、第二 号から前号までに掲げるも のを除く。)

イ 法人の信用状態に係る事 由その他これに類似するも 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상대방과 결정한 해당 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융지표가약정한 기간의 변화율에 기초하여금전 이급을 상호 약정하는거래

5.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 자가 사전에 정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금전 지급 을 약정하는 거래[해당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금융상품, 금융상품 과 관련된 권리 또는 금전 채권(금융상품인 것 및 금 융상품과 관련된 권리인 것 을 제외한다)을 이전할 것 을 약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외한다]

가. 법인의 신용상태와 관련 된 사유,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ロ 当事者がその発生に影響 を及ぼすことが不可能又は 著しく困難な事由であつて 、当該当事者その他の事業 者の事業活動に重大な影響 を与えるものとして政令で 定めるもの(イに掲げるも のを除く。)

六 前各号に掲げる取引に類似する取引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

22 この法律において「店頭 デリバティブ取引」とは、金 融商品市場及び外国金融商品 市場によらないで行う次に掲 げる取引(その内容等を勘案 し、公益又は投資者の保護の ため支障を生ずることがない と認められるものとして政令 で定めるものを除く。)をい う。

一 売買の当事者が将来の一 定の時期において金融商品 (第二十四項第三号の二及 び第五号に掲げるものを除 く。第三号及び第六号にお いて同じ。)及びその対価 の授受を約する売買であつ て、当該売買の目的となつ ている金融商品の売戻し又 정하는 것

나. 당사자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매우 어려운 사유로서 그당사자, 그 밖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정 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란 금융상품시장 및 해 외 금융상품시장에 따르지 아니하는 다음의 거래(그 내 용 등을 감안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로 인하여 지장 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 로 인정되는 거래로서 정령 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를 말한다.

1. 매매 당사자가 장래의 일정 시기에 금융상품(제24 항제3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3호 및 제6호에서 같다) 및 그 대가의 수수를 약정하는 매매로서 그 매매의 목적이된 금융상품의 환매,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は買戻しその他政令で定め る行為をしたときは差金の 授受によつて決済すること ができる取引

二 約定数値(第二十四項第 三号の二又は第五号に掲げ る金融商品に係る金融指標 の数値を除く。)と現実数 値(これらの号に掲げる金 融商品に係る金融指標の数 値を除く。)の差に基づい て算出される金銭の授受を 約する取引又はこれに類似 する取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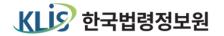
三 当事者の一方の意思表示 により当事者間において次 に掲げる取引を成立させる ことができる権利を相手方 が当事者の一方に付与し、 当事者の一方がこれに対し て対価を支払うことを約す る取引又はこれに類似する 取引

イ 金融商品の売買(第一号 に掲げる取引を除く。) ロ 前二号及び第五号から第 七号までに掲げる取引 四 当事者の一方の意思表示 により当事者間において当 該意思表示を行う場合の金 融指標(第二十四項第三号 한 때에는 차액 수수로 결제할 수 있는 거래

2. 약정수치(제24항제3호의 2 또는 제5호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융지표수치를 제 외한다)와 실제수치(제24항 제3호의2 또는 제5호의 금 융상품과 관련된 금융지표 수치를 제외한다)의 차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금전 수 수를 약정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3.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로 당사자 간에 다음의 거 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 리를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 에게 부여하고 그 당사자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 정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 사한 거래

가. 금융상품의 환매(제1호의 거래를 제외한다) 나. 제1호 및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거래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당사자 간에 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의 금융지표 (제24항제3호의2 또는 제5





の二又は第五号に掲げる金 融商品に係るものを除く 。)としてあらかじめ約定 する数値と現に当該意思表 示を行つた時期における現 実の当該金融指標の数値の 差に基づいて算出される金 銭を授受することとなる取 引を成立させることができ る権利を相手方が当事者の 一方に付与し、当事者の一 方がこれに対して対価を支 払うことを約する取引又は これに類似する取引 五 当事者が元本として定め た金額について当事者の一 方が相手方と取り決めた金 融商品(第二十四項第三号 、第三号の二及び第五号に 掲げるものを除く。)の利 率等若しくは金融指標の約 定した期間における変化率 に基づいて金銭を支払い、 相手方が当事者の一方と取 り決めた金融商品(これら の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 。)の利率等若しくは金融 指標の約定した期間におけ る変化率に基づいて金銭を 支払うことを相互に約する 取引(これらの金銭の支払

호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로서 사전에 약정하는 수치와 실제 그의사표시를 한 시기의 금융지표의 수치의 차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금전을 수수하게 되는 거래를 성립시킬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이당사자 일방에게 부여하고그당사자가 이에 대하여대가 지급을 약정하는 거래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5. 당사자가 원본으로 정한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 이 상대방과 계약한 금융상 품(제24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이율 등이나 금융지표를 약정한 기간의 변화율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과 계약한 금융상품(제 24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 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의 이율 등이나 금융 지표를 약정한 기간의 변화 율에 기초하여 금전 지급을 상호 약정하는 거래[이들 금전의 지급과 더불어 해당





とあわせて当該元本として 定めた金額に相当する金銭 又は金融商品(同項第三号 の二及び第五号に掲げるも のを除く。)を授受するこ とを約するものを含む。) 又はこれに類似する取引 六 当事者の一方が金銭を支 払い、これに対して当事者 があらかじめ定めた次に掲 げるいずれかの事由が発生 した場合において相手方が 金銭を支払うことを約する 取引(当該事由が発生した 場合において、当事者の一 方が金融商品、金融商品に 係る権利又は金銭債権(金 融商品であるもの及び金融 商品に係る権利であるもの を除く。)を移転すること を約するものを含み、第二 号から前号までに掲げるも のを除く。) 又はこれに類 似する取引

イ 法人の信用状態に係る事 由その他これに類似するも 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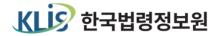
ロ 当事者がその発生に影響 を及ぼすことが不可能又は 著しく困難な事由であつて 원본으로 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금융상품 (동항 제3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6.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 자가 사전에 정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금전을 지 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금융상품, 금 융상품과 관련된 권리 또는 금전채권(금융상품인 것 및 금융상품과 관련된 권리인 것을 제외한다)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포함 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가. 법인의 신용상태와 관련 된 사유,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나. 당사자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매우 어려운 사유로서 그





、当該当事者その他の事業 者の事業活動に重大な影響 を与えるものとして政令で 定めるもの(イに掲げるも のを除く。)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これらと同様の経済的性質を有する取引であつて、公益又は投資者の保護を確保することが必要と認められ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取引

23 この法律において「外国市場デリバティブ取引」とは、外国金融商品市場において行う取引であつて、市場デリバティブ取引と類似の取引

(金融商品(次項第三号の二に掲げるものに限る。)又は金融指標(当該金融商品の価格及びこれに基づいて算出した数値に限る。)に係るものを除く。)をいう。

2.4 この法律において「金融 商品」とは、次に掲げるもの をいう。

- 一 有価証券
- 二 預金契約に基づく債権その他の権利又は当該権利を 表示する証券若しくは証書 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

당사자, 그 밖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이와 같은 경제적 성질을 가진 거래로서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이 법에서 "해외 장내파생 상품 거래"란 해외금융시장에 서 하는 거래로서 장내파생상 품 거래와 유사한 거래[금융 상품(제24항제3호의2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금융지표(해당 금융상품의 가 격 및 이에 기초하여 산출한 수치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금융상품"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 1. 유가증권
- 2.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 그 밖의 권리 또는 해당 권 리를 표시하는 증권이나 증 서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前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

三 通貨

三の二 商品(商品先物取引 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 百三十九号) 第二条第一項 に規定する商品のうち、法 令の規定に基づく当該商品 の価格の安定に関する措置 の有無その他当該商品の価 格形成及び需給の状況を勘 案し、当該商品に係る市場 デリバティブ取引により当 該商品の適切な価格形成が 阻害されるおそれがなく、 かつ、取引所金融商品市場 において当該商品に係る市 場デリバティブ取引が行わ れることが国民経済上有益 であ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 め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 。)

四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同一の種類のものが多数存在し、価格の変動が著しい資産であつて、当該資産に係るデリバティブ取引に類のは、でリバティブ取引に類似する取引を含む。)について投資者の保護を確保することが必要と認められるも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 외한다)

3. 통화

3의2. 상품[「상품선물거래 법. (소화25<1950>년 법 률 제239호) 제2조제1항에 따른 상품 중 법령에 따른 해당 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의 유무. 그 밖에 해당 상품의 가격 형성 및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상품과 관련된 장내파생상 품 거래로 인하여 해당 상 품의 적절한 가격 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없으며, 거래 소 금융상품시장에서 해당 상품과 관련된 장내파생상 품 거래를 하는 것이 국민 경제상 유익한 것으로서 정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동일한 종류가 다수 존재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자산으로서 해당 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파생상품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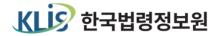
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商品先物取引法第二条第 一項に規定する商品を除く 。)

五 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 掲げるもの又は前号に掲げ るもののうち内閣府令で定 めるものについて、金融商 品取引所が、市場デリバティブ取引を円滑化するため 、利率、償還期限その他の 条件を標準化して設定した 標準物

- 25 この法律において「金融 指標」とは、次に掲げるもの をいう。
 - 一 金融商品の価格又は金融 商品(前項第三号及び第三 号の二に掲げるものを除く 。)の利率等
 - 二 気象庁その他の者が発表 する気象の観測の成果に係 る数値
 - 三 その変動に影響を及ぼすことが不可能若しくは著しく困難であつて、事業者の事業活動に重大な影響を与える指標(前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又は社会経済の状況に関する統計の数値であつて、これらの指標又

- 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상품선물거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품을 제외 한다)
- 5.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것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 중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상품 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이율, 상환기한, 그 밖의 조건을 표준화하여 설정한 표준물
- ② 이 법에서 "금융지표"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 1. 금융상품의 가격 또는 금융상품(제24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이율 등 2. 기상청, 그 밖의 자가 발 표하는 기상 관측 성과와 관련된 수치
 - 3.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사회경제 상황에 관한 통계 수치로서이들 지표 또는 수치와 관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に基づいて算出した数値

26 この法律において「外国 金融商品取引所」とは、第百 五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 内閣総理大臣の認可を受けた 者をいう。

27 この法律において「有価 証券等清算取次ぎ」とは、金 融商品取引業者又は登録金融 機関が金融商品取引清算機関 又は外国金融商品取引清算機 関の業務方法書の定めるとこ ろにより顧客の委託を受けて その計算において行う対象取 引」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 いて同じ。)であつて、対象 取引に基づく債務を当該金融 련된 파생상품 거래(파생상품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투자자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정령으로 정하는 것(「상품선물거래법」 제2조제2항에따른 상품지표로서 상품 외의 동조 제1항에 따른 상품 기격에 기초하여 산출된 것을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기초하여 산출한 수치 % 이 법에서 "해외 금융상품 거래소"란 제155조제1항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유가증권 등 청산 중개"란 금융상품거래업 자 또는 등록금융기관이 금융 상품거래청산기관 또는 해외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업무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위탁을 받아 그 이익 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거래 (제28항에 따른 "대상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로서 대상거래에 따른 채 무를 해당 금융상품거래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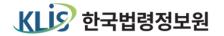
商品取引清算機関(当該金融 商品取引清算機関が第百五十 六条の二十の十六第一項に規 定する連携金融商品債務引受 業務を行う場合には、同項を 規定する連携清算機関等を引 規定する連携清算機関等を引 持算機関に負担させることが 要件とし、かに該当する のをいう。

- 一 当該顧客が当該金融商品 取引業者又は登録金融機関 を代理して成立させるもの であること。
- 二 当該顧客がその委託に際 しあらかじめ当該対象取引 に係る相手方その他内閣府 令で定める事項を特定する ものであること。
- 28 この法律において「金融 商品債務引受業」とは、金融 商品取引業者、登録金融機関 又は証券金融会社(以下この 項において「金融商品債務引 受業対象業者」という。)を 相手方として、金融商品債務 引受業対象業者が行う対象取 引(有価証券の売買若しくは デリバティブ取引(取引の状 況及び我が国の資本市場に与

기관(해당 금융상품거래청산 기관이 제156조의20의16제1 항에 따른 연대금융상품채무 인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 항에 따른 연대청산기관 등을 포함한다) 또는 해외 금융상 품거래청산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한다.

- 1. 해당 고객이 해당 금융 상품거래업자 또는 등록금 융기관을 대리하여 성립시 킬 것
- 2. 해당 고객이 위탁 시에 사전에 해당 대상거래와 관 련된 상대방, 그 밖에 내각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 정할 것
- ② 이 법에서 "금융상품 채무 인수업"이란 금융상품거래업 자, 등록금융기관 또는 증권 금융회사(이하 이 항에서 "금 융상품 채무인수업 대상업자" 라 한다)를 상대방으로서 금 융상품 채무인수업 대상업자 가 하는 대상거래[유가증권의 매매나 파생상품 거래(거래 상황 및 일본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사정을





える影響その他の事情を勘案 し、公益又は投資者保護のため支障を生ずることがなったという。 認められるものとして又は関連を 定める取引を除く。)くは関連 をいう。)に基づく債の を、引受け、更改その他の 法により負担することを して行うことをいう。

29 この法律において「金融商品取引清算機関」とは、第百五十六条の二又は第百五十六条の二又は第百五十六条の十九第一項の規定により内閣総理大臣の免許又は承認を受けて金融商品債務引受業を行う者をいい、「外国金融商品取引清算機関」とは、第百五十六条の二十の二の規定により内閣総理大臣の免許を受けて金融商品債務引受業を行う者をいう。

30 この法律において「証券 金融会社」とは、第百五十六 条の二十四の規定により内閣 総理大臣の免許を受けた者を いう。

31 この法律において「特定投資家」とは、次に掲げる者をいう。

감안하여 공중 또는 투자자 보호로 인하여 지장이 발생하 는 일은 없을 것으로 인정되 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제외한다) 또는 이에 수반하거나 관련된 거래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 다]에 따른 채무를 인수, 경 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금융상품거래 청산기관"이란 제156조의2 또는 제156조의19제1항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아 금융상품 채무인수업을 하는 자를 말 하며, "해외 금융상품거래 청 산기관"이란 제156조의20의 2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면 허를 받아 금융상품 채무인 수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증권금융회사" 란 제156조의24에 따라 내각 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특정투자가"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 一 適格機関投資家
- 二国
- 三 日本銀行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第七十九条の二十一に規定する投資者保護基金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法人

32 この法律において「特定 取引所金融商品市場」とは、 第百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 により同項に規定する一般投 資家等買付けをすることが禁 止されている取引所金融商品 市場をいう。

33 この法律において「特定 上場有価証券」とは、特定取 引所金融商品市場のみに上場 されている有価証券をいう。 34 この法律において「信用 格付」とは、金融商品又は法 人(これに類するものとして 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を含む 。) の信用状態に関する評価 (以下この項において「信用 評価」という。)の結果につ いて、記号又は数字(これら に類するものとして内閣府令 で定めるものを含む。)を用 いて表示した等級(主として 信用評価以外の事項を勘案し

- 1. 적격기관투자가
- 2. 국가
- 3. 일본은행
- 4. 제1호부터 제3호 외에 제79조의21에 따른 투자자 보호기금, 그 밖의 내각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

② 이 법에서 "특정거래소 금 융상품시장"이란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동항에 따른 일 반투자가 등 매입이 금지된 거래소 금융상품시장을 말한 다.

③ 이 법에서 "특정상장유가 증권"이란 특정거래소 금융상 품시장에만 상장된 유가증권 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신용평가"란 금융상품 또는 법인(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내각부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신용상태에 관한 평가(이하 이 항에서 "신용평가"라 한다) 결과에 대하여 기호 또는 숫자(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내각부렁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주로 신용평가 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정해진 등급으로





て定められる等級として内閣 府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 をいう。

35 この法律において「信用格付を付養」とは、信用格付を付与し、は、信用格付を付与し、提供し又は閲覧に供する行為(行為の相手方の範囲その他行為の態様に知るのと資者の保護に欠けるおそれが少ないと認められるものという。)を業として行動のを除く。)を業としてう。

36 この法律において「信用格付業者」とは、第六十六条の二十七の規定により内閣総理大臣の登録を受けた者をいう。

37 この法律において「商品市場開設金融商品取引所」とは、第八十七条の二第一項ただし書の認可を受けて商品先物取引(商品先物取引法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先物取引をいう。以下同じ。)をするために必要な市場を開設する株式会社金融商品取引所をいう。

38 この法律において「商品 取引所」とは、会員商品取引 所(商品先物取引法第二条第 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신용평가업"이 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제 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 (행위의 상대방의 범위, 그 밖에 행위의 양태에 비추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내 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신용평가업자" 란 제66조의27에 따라 내각 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상품시장개설 금융상품거래소"란 제87조의 2제1항 단서의 인가를 받아 상품선물거래(「상품선물거 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선물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 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장을 개설하는 주식회사 금융상품거래소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상품거래소"란 회원상품거래소(「상품선물거 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五項に規定する会員商品取引 所をいう。)及び株式会社商 品取引所(同条第六項に規定 する株式会社商品取引所をい 、株式会社金融商品取引所 に関する規制と同等の水準に あると認められる規制を受け る者として政令で定める者に 限る。)をいう。

39 この法律において「商品 取引所持株会社」とは、商品 先物取引法第二条第十一項に 規定する商品取引所持株会社

(金融商品取引所持株会社に 関する規制と同等の水準にあ ると認められる規制を受ける 者として政令で定める者に限 る。)をいう。

40 この法律において「特定金融指標」とは、金融指標であって、当該金融指標に係るデリバティブ取引又は有価証券の取引の態様に照らして、その信頼性が低下することにより、我が国の資本市場に重大な影響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内閣総理大臣が定めるものをい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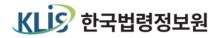
41 この法律において「高速 取引行為」とは、次に掲げる 行為であつて、当該行為を行 회원상품거래소를 말한다) 및 주식회사 상품거래소(동조 제 6항에 따른 주식회사 상품거 래소를 말하며, 주식회사 금 융상품거래소에 관한 규제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규제를 받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말 한다.

③ 이 법에서 "상품거래소 주 식회사"란 「상품선물거래 법」 제2조제11항에 따른 상 품거래소 주식회사(금융상품 거래소 주식회사에 관한 규제 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되 는 규제를 받는 자로서 정령 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특정금융지표" 란 금융지표로서 해당 금융지 표와 관련된 파생상품거래 또 는 유가증권의 거래 양태에 비추어 그 신뢰성이 저하되면 일본의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 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법에서 "고빈도 매매" 란 다음의 행위로서 그 행위 에 대한 판단이 전자정보처리





うことについての判断が電子 情報処理組織により自動的に 行われ、かつ、当該判断に基 づく当該有価証券の売買又は 市場デリバティブ取引を行う ために必要な情報の金融商品 取引所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 める者に対する伝達が、情報 通信の技術を利用する方法で あつて、当該伝達に通常要す る時間を短縮するための方法 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方法 を用いて行われるもの(その 内容等を勘案し、投資者の保 護のため支障を生ずることが ないと認められるものとして 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 をいう。

- 一 有価証券の売買又は市場 デリバティブ取引
- 二 前号に掲げる行為の委託 三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 、第一号に掲げる行為に係 る行為であつて、前二号に 掲げる行為に準ずるものと 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 42 この法律において「高速 取引行為者」とは、第六十六条 の五十の規定により内閣総理大 臣の登録を受けた者をいう。

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 행되며, 그 판단에 따른 해당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장내파 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금융 상품거래소, 그 밖의 내각부 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필 요한 정보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그 전달 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각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 달되는 것(그 내용 등을 감안 하여 투자자 보호로 인하여 지장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 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다)을 말한다.

-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
 제1호의 행위의 위탁
- 3. 제2호 외에 제1호의 행위와 관련된 행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이 법에서 "고빈도 매매자"란 제66조의50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